2021년 제9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 월 13 일

여 수 시 장 권오봉

여수시 규칙 제774호

붙임 여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규칙 제774호

여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여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여수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

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의 건당 500만원 미만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의 건당 500만원 미만의 징수결정

③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 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가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여수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각 목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2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본청 국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단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가.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 과장, 사업소·출장소장

가. 건당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한다.

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회계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3과 같다.

② 훈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 4와 같다.

제7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23조의2제3호에 따라 구매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인터넷 구매를 포함한다)에는 일반 지출 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여수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4호 중 “「시 재무회계규칙」”을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③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여수시 재무회계규칙」”을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⑤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4조 중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⑦ 여수시 여서·문수지구도시개발사업택지공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6조 중 “「시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⑧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⑨ 여수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의 제목 “(재무회계규칙 준용)”을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을「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⑩ 여수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⑪여수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제2조제1항 관련)

관 직 명	본 청	지방의회	제1관서 (읍·면·동제외)	기타 관서· 임시관서	읍·면·동	읍·면의 출장소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회 계 책 임 관	행정지원국장					
징 수 관	행정지원국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읍·면·동장	
분 임 징 수 관	세정과장,징수과장,세외수입 주관 담당관·과의 장(이하 "담당관·과장"이라 한다)		세입담당과장			
재 무 관	행정지원국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읍·면·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 임 재 무 관	회계과장, 각 담당관·과장 (일상경비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주무전문위원	경리담당과장, 각 관·과장 (제1관서의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소장
총괄채권관리관	행정지원국장 (세정과장,징수과장)					
채 권 관 리 관	소관 담당관·과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읍·면·동장	
총괄부채관리관	기획경제국장					
부 채 관 리 관	소관 담당관·과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	기획경제국장 (기획예산과장)					
통 합 지 출 관	회계과장					
지 출 원	경리업무팀장	의정업무팀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경리업무팀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읍·면·동의 경리업무팀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 입 금 출 납 원	세외수입·세정·징수업무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팀장	세입업무팀장	서무업무팀장	세무·재무업무팀장	
일상경비출납원	각 관·과 서무업무팀장	의정업무팀장	각 관·과 서무업무팀장	서무업무팀장 및 임시관서의 서무업무팀장(담당자)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총무업무팀장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경리업무담당자	경리업무담당자	경리업무담당자	서무업무팀장	경리업무담당자	총무업무팀장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	기타관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지출원이 없는 관서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관련)

대상경비	합의대상금액 (회계과장)	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	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전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전액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전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전액	
8. 기타 경비	전액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범위(제6조제2항 관련)

1. 예산 외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여수시와 전라남도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여수시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승인을 받아야 하거나 여수시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